

채권법 9

- □ 불확정기한부 채무 :제387조 1항 2문
- □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 : 제387조 2항
-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.
- (출처 : 대법원 2009.11.26. 선고 2009다 59671 판결【보증채무금】 [공2010상,36])

-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
- (출처: 대법원 2008.2.1. 선고 2007다8914 판결 【부당이득금】 [공2008상,301])

- 예외 : □ 제603조 2항
- 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(그 당일부터)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됨. 대법원 2012.2.23. 선고 2010다97426 판결【부당이득금】
- (출처 : 대법원 2012.2.23. 선고 2010다97426 판결【부당이득금】 [공보불게재])

- 2)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지체할 것
- 단, 제392조와 구별
- 3) 채무자의 귀책사유
- 4) 위법성
- - 위법성으로 조각하는 사유 :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
- - 채권이 가압류 가치분 된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이행함.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.

-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,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(당원 1981.9.22.선고 81다253 판결 참조).

-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2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**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** 보아야 할 것이다.

- .

-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"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"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2중 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"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"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

-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**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**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.
- 이처럼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할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탁을 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4.12.13. 선고 93다951 판결【부당이득금】 [집42(2)민,299;공 1995.1.15.(984),463])

- 이행지체의 효과 : 1) 강제이행청구권, 2) 손해배상청구권, 3) 책임의 가중, 4) 계약해제권
- 2) 손해배상청구권: 원칙은 지연배상, 예외가 전보배상
- - 지연배상의 범위 : □ 목적물 인도의 이행지체 그 목적물의 임료, 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
- - 전보배상: 제395조
- 여기서 전보배상은 지연배상을 모두 포함한 것.